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45 | 2024.07.22 (2024.07.15~07.21)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4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7.15~07.21)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지방시대위원회(관계부처 합동)>은 「제2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개최하여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바이오 R&D특구 활성화 등 첨단산업 거점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스마트팜 확충 등 농생명산업 허브 조성,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등 문화·복지 기반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 추진해 '생명 경제도시' 도약 적극 지원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함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7.17(수)부터 시행을 밝힌바,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급망 위기 대응과 이와 관련된 사업재편 수요 대응을 위해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하여 현행 5개 유형에서 6개로 사업재편 유형 확대 ②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되는 「상법」, 「공정거래법」상 특례가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되어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 단축 ③ 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을 인정하는 등 사업재편 요건 완화 ④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 신설 ⑤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우대가점을 부여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사업재편의 확산 도모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방법 및 교육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의약품 공급자등에 허용되는 경제적인 이익 제공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 내 데이터 연계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는 ①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시 사전 동의·고지 기간 구체화 ② 반복 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최소 기간 구체화 ③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④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절차 위임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도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해당 제조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인 피해자가 결함의 존재,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며, 제조물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특례를 두는 등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5건 발의(정준호·허영·서왕진·채현일·권성동의원 각각 대표발의),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CVC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40%에서 50%로, 해외투자 제한의 경우 20%에서 30%로 완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금 지급한도를 상향하고자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벌금을 2배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2인)**」,

국가전략기술의 안정적인 개발과 적용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의 범위 및 공제율, 일몰기한을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건 발의(정준호·조지연의원 대표발의),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는 톤세제 특례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발의(조지연,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수도권 지역 과밀화를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해매체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사업자에게는 회원가입 신청자가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승낙을 거부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5인)**」,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및 축산물의 거래가격 보고·공개 등 다양한 신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는 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에 이륜자동차를 명시하여 전기이륜자동차 관련 지원 정책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전기이륜자동차와는 호환이 되지 않으므로 충전구역에의 주차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의무휴업일 제한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요청받은 업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漏泄)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특정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여기구의원 등 10인)」** ,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하여 수탁·위탁거래를 여러 차례 나누어 위탁하거나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그에 맞추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

자동차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해당 영상정보가 급발진 여부 판별에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자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등이 의원입법 또는 정부 제출로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금주(7/22(월)~7/26(금)) <법제사법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2차), <정무위>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7/22), 비금융분야 업무보고(7/24), 금융분야 업무보고(7/25), <기획재정위>는 국세청 등 업무보고(7/22), <과학기술방송통신위>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1차 7/24, 2차 7/25), <행정안전위>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환경노동위>는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7/22)을 실시할 예정이며, <인사청문특위>에서는 위원장·간사 선임(7/22) 이후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7/24),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7/25), 대법관(3인)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7/26)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제2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관계부처 합동) ... 8
- 제1차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 12
- 공급망 안정 유형 신설·사업재편 요건 완화,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산업통상자원부) ... 14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7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방부) ... 17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방부) ... 18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 ... 18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 19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20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 20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방송통신위원회) ... 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 2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 2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소벤처기업부) ... 2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정거래위원회) ... 2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정거래위원회) ... 24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특허청) ... 25
-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특허청) ... 2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 2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 27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 27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 28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의원 등 12인) ... 29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32인)	29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4인)	3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31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3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2인)	3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32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3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3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7인)	3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3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3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3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3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3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3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5인)	37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37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3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5인)	3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39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3인)	4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41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5인)	41
•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42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4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26인)	44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44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45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45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46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7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47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여기구의원 등 10인)	48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49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5인)	49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5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51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균의원 등 20인)	51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52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4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7.15~07.21) [바로가기](#)

- [소송]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대법원 최종 승소)
- [ESG] 2024년 ESG 동향 중간 결산 및 하반기 전망 : 지속가능성 규제와 기업지배구조
- [중국] 중국 회사법 중 경영진 관련 규정의 개정과 시사점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지방시대위원회)	제2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바이오 R&D특구 활성화 등 첨단산업 거점화 -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스마트팜 확충 등 농생명산업 허브 조성 -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등 문화·복지 기반 강화 -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 추진해 '생명 경제도시' 도약 적극 지원	2024-07-18
------------------------------	--	-------------------

제27차 민생토론회에서는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전북을 탄소산업·수소산업 및 첨단해양장비산업 등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이차전지·바이오 분야의 인력양성·기술개발 확대와 새만금 지역의 산업용지 확대방안을 모색함

아울러, ‘전북특별법’에 기반하여 지역특화 발전을 뒷받침하고,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와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건립, 문화콘텐츠 산업 등 문화·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와 함께, 수직농장·스마트농업 고도화,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 등을 통해 전북을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공간재편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시킬 방안을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는

(1)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① 전북의 탄소산업 역량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의 대규모 탄소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착수와 함께 전북에 탄소소재·부품의 생산지원과 성능분석 등 테스트 기반이 조성됨으로써 전북은 우리 탄소산업과 기업을 지원하는 중심지로서 첨단산업 핵심 역량을 보유하게 되고, 우리 기업들도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

< 탄소소재·부품 테스트베드(매뉴팩처링 인큐베이션 허브) 조감도 >



② 완주 수소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미래차 전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 수소차 핵심기술에 대한 R&D 지원과 함께 수소상용차의 단위 부품에서 실제 차량까지 검증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시장 선점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 전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용차 부품기업들이 수소상용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

③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 통한 수소산업 육성 지원 (국토교통부)

-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소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친환경 청정에너지원인 수소사용의 확대에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④ 이차전지 석·박사 고급인재 육성을 위한 KAIST · GIST 공동 대학원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차전지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KAIST와 전북 및 새만금지역을 비롯한 호남권의 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GIST가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임
- ▲시설·장비 공동 이용, ▲학생·연구자·교원 상호 교류, ▲산업체와의 공동 기술개발 협력 등에서 단일 추진 방식보다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⑤ 전북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북 연구개발특구가 더욱 활성화된다면 지역 바이오산업 혁신의 엔진, 나아가 글로벌 도약의 발판이 되어 지역 연구자와 기업인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보임

⑥ 첨단 해양 무인장비 산업화 지원 (해양수산부)

- 공인 시험평가 체계 구축은 국내 최초 해양 무인장비 성능평가 및 인증제를 통해 해양 장비의 산업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
-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했던 성능평가 대신 공인 시험평가를 활용할 수 있어 성능검증 비용대폭 절감
- 중소기업들은 시험평가 체계를 바탕으로 사업화 실적을 축적하고 제품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국내외 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전북 지역에 구축되는 내해 성능검증 시험장을 기점으로 해양장비 제작기업뿐만 아니라 해양플랜트 산업, 해양쓰레기 수거업 등 수중작업이 필요한 분야 등 관련 산업의 집적화와 다방면에서 고용창출이 기대

< 내해 조건 실해역 시험장 >



< 해양 무인시스템 개념 및 분류 >



⑦ 새만금 산업용지 면적 확대 (새만금개발청)

- 광활하고 저렴한 부지 · 획기적인 세제 혜택 · 신속한 규제 개선 ·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종합적인 강점을 지닌 새만금 국가산단의 확장은 대한민국의 미래혁신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기반이 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

(2)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①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지원 (행정안전부)

-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지원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지역의 미래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강점을 살린 특색있는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주도 균형발전’ 모델로 자리잡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②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문화체육관광부)

-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을 통해 꿈나무선수·청소년대표·후보선수의 훈련여건이 개선되어 기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문체부가 현재 국가대표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국가대표 지원 종목 및 인원 확대, 스포츠 과학 지원 강화 등과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
-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남원종합스포츠타운과 연계한 지역 특화 스포츠도시 육성을 통하여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③ 전통 문화를 통한 전북지역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유연구용역을 통해 전북을 비롯한 지역콘텐츠 산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외 지역콘텐츠 거점(지원센터, 클러스터, 지구, 단지 등) 구축 사례 분석을 통해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의 타당성과 기본 방향을 살펴볼 예정

④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지원 (보건복지부)

- 전북권 통합재활병원은 권역 거점 재활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미충족 재활의료 해소, 지역 필수요를 살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① 농생명 산업의 중심인 전북을 시작으로, 농업·농촌구조 혁신 가속화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농업, ICT 기술 융복합을 계기로 농업의 외연 확장, 농지 등 입지제도 개선,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을 중점 추진
- 특히 전북은 농생명산업과 인프라가 집약되어 있는 만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공간 재편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 시킬 계획

① -1 농업의 외연 확장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농업, 가공·유통 등 농업의 전후방산업 관련 새로운 기업들의 농업진출이 더 확대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임
- 또한, 새로운 형태의 농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혁신적 기업과 청년 유입, 산업규모 확대 등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더 촉진할 것으로 기대

① -2 농지 등 입지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 규제 완화를 계기로 생활 인프라가 개선되고 주말 체험 영농인 등 생활인구가 증가하여 농촌지역의 삶의 질 개선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특례지구를 중심으로 농지 규제를 완화해 민간 투자 확대, 외부 기업·인력 유입 촉진

① -4 수직농장 스마트농업 고도화 (농림축산식품부)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을 현장으로 확산('27년까지 30% 목표)하여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고, 청년·혁신기업 등의 농업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① -5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 전북에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시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②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은 인근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K-Food 수출, 푸드테크·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등 미래 농생명 산업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

③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 (농림축산식품부)

- 새만금이 농생명용지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식량자급률 제고,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 농업생태·관광 활성화, 첨단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공사 개요

□ 사업 개요

- 주요 공사 : 양수장 1개소 신설 및 4개소 변경, 도수로 13.6km, 여과시설 2개소, 송수관로 39.4km, 옥구저수지 보강 등
- 사업비 : 4,572억원

□ 사업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제1차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개최

- 국방과학기술 혁신과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과 국방 분야 융합·협력 강화

2024-07-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공동 주관으로 제1차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과학 기술·디지털 혁신과 미래전 환경에 대비한 정예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그간에 발굴한 협력방안을 토대로 4대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방과학기술의 수준을 고도화하고, 국내개발 자립기술을 확대하기 위해 민·군 기술협력 강화

- 군 적용 가능성이 있는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군 요구 및 규격에 맞는 수준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추진과, 인공지능, 반도체, 방사선 등 미래전장에 적용될 혁신적이고 파급력이 큰 기술을 실증·개발하여 국방력 강화와 원천분야의 민간 기술역량도 함께 축적·강화할 예정
- 6세대(6G) 후보 주파수 대역의 민·군 공동사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향후 유·무인체계, 로봇, 드론 등 민·군 주파수 소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첨단 분야의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을 위한 범 부처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
- 지상에서 해상, 공중까지 끊김 없는(seamless) 통신 구현을 위해 차세대 네트워크의 핵심 인프라인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할 예정

- ② **민간의 우수한 연구개발(R&D) 성과물 및 양자기술 등을 군에 신속하게 적용·점검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보유한 국방 분야 적용 가능한 민간기술 등을 발굴하고, 이를 군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공동 시범 실증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함
 - 양 부처 및 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험시설 등 민·관·군 연구 인프라를 상호 활용 예정
 - 양자암호통신의 국방 분야 실증을 위해 보안성 검증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양 부처간 긴밀한 양자기술 정보교류를 위해 ‘민관군 양자정보협의회’(24.6.27일 출범)’ 적극 활용
- ③ **미래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할 과학기술 및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 군 장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등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 우수한 이공계 분야 대학생들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전문사관제도의 지원 대상을 기존 학사과정에서 석사과정까지 확대
 - 과기정통부에서 추진 중인 국내 5개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재학생 대상으로 사이버전문사관 후보생을 선발하여 군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 강화
 - * 고려대(세종), 세종대, 성신여대, 전남대, 충남대
 - 군 전문인력 및 산업예비인력(전역예정자)에 대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지정·운영 중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과 인근 군부대를 매칭하여 군 장병들이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④ **양 부처 및 산하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부처 간 인사교류 및 연구기관 간 기술 분야별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인공지능의 확산을 위한 부처 간 정책협력 강화**
- 인공지능, 양자, 우주, 에너지 등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 국방과학기술 발굴 및 연구개발 과제 기획 등을 수행하는 산·학·연·군 전문가 워킹그룹을 공동 개설 및 정례화
 - * 상호 이해도 증진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부처 및 출연연구기관간 인적 교류도 추진
 - 인공지능의 국방영역에서의 확산과 민간에서의 관련 기술 활용 증진을 위해, 인공지능 보안, 인공지능 안전, 급증하는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방안 등에 대한 정책연구 및 기술 연구개발 등 협력

< 4대 추진전략 및 10대 협력과제 >



산업통상자원부

공급망 안정 유형 신설·사업재편 요건 완화,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2024-07-17

- 신(新)「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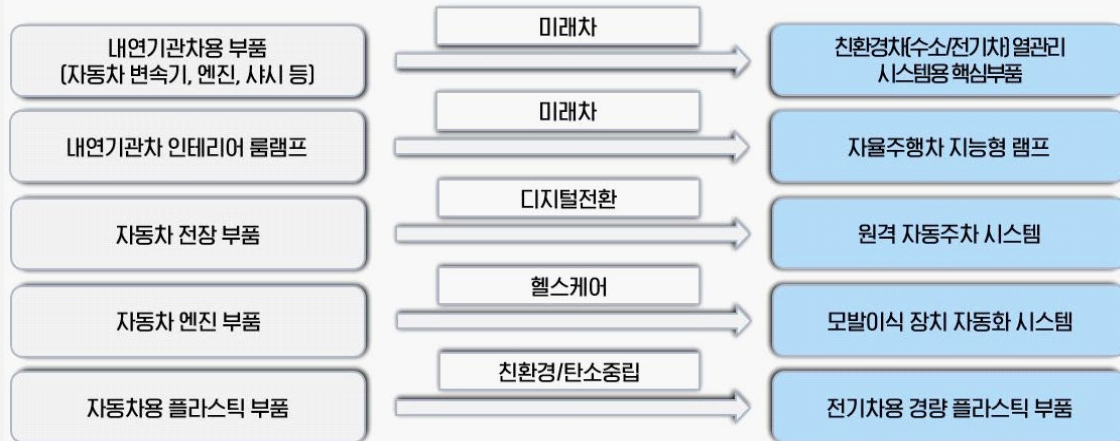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재편 유형 신설, 요건 완화, 현장지원 센터 신설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7.17(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공급망 위기 대응과 이와 관련된 사업재편 수요 대응을 위해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하여 현행 5개 유형*에서 6개로 사업재편 유형 확대
* 사업재편 유형 :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 ②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되는 「상법」, 「공정거래법」상 특례가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되어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 단축
- ③ 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을 인정하는 등 사업재편 요건 완화
- ④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 신설
- ⑤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우대가점을 부여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사업재편의 확산 도모

< 주요 업종별 사업재편 추진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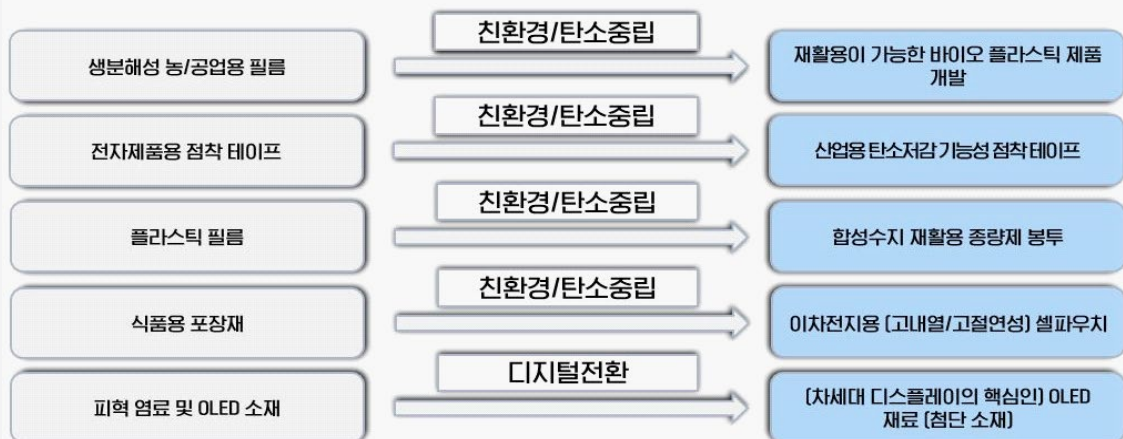
< 자동차부품 >



< 조선기자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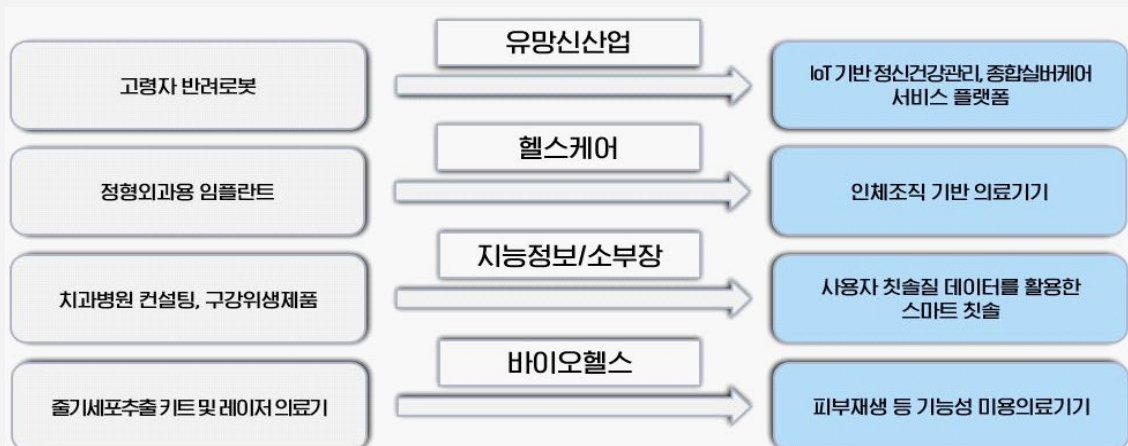
< 석유화학 >



< 철 강 >



< 바이오·제약·의료기기 >



< 반도체 >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24 시행 예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는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하면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066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

이에 따라,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합병신고서에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인과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고, 기업결합의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고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는 합병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5백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7조 신설, 별표 6 제1호)

국방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17 시행 (다만, 제22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 예정)
-----	---------------------------------	---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방위산업체 대표 및 임원 등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관한 범죄경력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합동참모의장이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023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 및 법률 제20190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

이에 따라, 범죄경력조치 요청 및 회신의 절차·범위 등을 정하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 자체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방산업체 지정취소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절차·범위 구체화 (제8조 신설)

-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체 등의 대표 및 임원에 대한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면 경찰청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군검찰부의 장 등에게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위해 필요하면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정보를 해당 방위산업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청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군검찰부의 장 등은 요청일부터 최근 5년간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로 회신하도록 함

②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방법(제22조제6항 신설)

-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 그 필요성, 운영개념,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등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국방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되, 과학적·계량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면 국방부,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 및 방위산업 분야 민간전문가 등의 소요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③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 설치 (제61조의12제7항, 제61조의12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가 위임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함

국방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7-17 시행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 예정)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방위산업체 대표 및 임원 등의 「군사기밀 보호법」 등 위반 행위에 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면 요청일부터 최근 5년간의 해당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회신하도록 하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자체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법률 제20023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 및 법률 제20190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705호, 2024. 7. 16. 공포, 7. 17. 및 8. 7. 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 및 회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자체 심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미리 관련기관 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사고 및 보안사고가 발생한 방위산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에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2장제4조의2 신설, 제7조제2항, 제8조, 제17조제1항제2호 등)

농림축산식품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24 시행 예정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89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내수 위주의 쌀가공업자 중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 등에게 쌀가공품에 관한 국외 전시회 참가 지원, 국외 공동 마케팅 지원 및 쌀가공품에 관한 국외 진출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 대상이 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3조제1항, 제16조의2 신설, 제19조제5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17 시행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34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

이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방법,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범위 및 수입·지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방법 (제33조 신설)

-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사항을 목적·명칭 등으로 정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의료기술협력단의 정관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함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제34조 신설)

-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로 산병연협력 총괄 기획·조정, 산병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등을 정함

③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지출 (제35조 및 제37조 신설)

-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금으로 이자수입, 해당 의료기술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등을 사용하는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이 지급하는 사용료를 규정함
- 의료기술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업무 및 보건의료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함

④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제38조, 제39조 및 제41조 신설)

- 의료기술협력단 소관의 수입과 지출은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에 계상(計上)하도록 함
-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의료기술협력단에는 수입·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지출원을 두도록 함
- 의료기술협력단은 재무상태표·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구성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7-17 시행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으로 하여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3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

이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운전자격확인을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에게 운전면허증 사본과 운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받은 서류를 직접 확인하거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며,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7조의2 신설, 별지 제10호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7-18 시행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생활규제 혁신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교육을 다시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려는 것임 (제52조제3항, 제52조제3항제1호, 제52조제3항제2호)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24 시행 예정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를 한 경우 해당 대리점과 판매점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65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

이에 따라,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 대리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한 경우 및 판매점이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대리점과 해당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해당 판매점 또는 대리점이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정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천5백만원, 2차 위반 시 3천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6조제2항, 별표 3 제2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24 시행예정

주요주주의 갑작스러운 주식 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여 일반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고 주요주주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거래계획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거래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자가 거래계획에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37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

이에 따라,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임원 및 주요주주의 범위,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거래규모, 거래계획과 달리 특정증권 등의 매매를 할 수 있는 규모,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거래계획에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거래계획의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임원 및 주요주주의 범위 (제200조의3제1항 신설)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은 거래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임원 및 주요주주의 범위에서 제외함

②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거래규모 (제200조의3제2항 및 제5항 신설)

-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상속·주식배당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 발행되는 특정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양도 계약에 따라 특정증권 등을 양수·양도하는 경우,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특정증권 등을 처분하는 경우 등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거래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서 제외함
- 거래계획의 거래수량과 그 거래계획의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 간 거래수량을 합산한 거래수량이 특정증권 등 총수량의 100분의 1 미만이고, 거래계획의 거래금액과 그 거래계획의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 간 거래를 합산한 거래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범위에서 제외함

③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제200조의3제7항 신설)

-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사망한 경우, 임원 또는 주요주주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원 또는 주요주주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또는 주채권은행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등에는 거래계획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보아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④ 거래계획에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379조제6항 신설)

- 거래계획에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 등에 대한 과징금은 거래계획 보고일의 다음 영업일 등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증권상장법인 주식의 최종가격에 발행주식 총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의 1만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하되, 그 산정된 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억원의 1만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함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7.18. ~08.27.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그 종사자가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4.18. 공포, 2024.10.19. 시행)됨

이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방법 및 교육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아울러 의약품 공급자등에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 내 데이터 연계 근거 마련, 의약품 재심사 제도 관련 「약사법」 개정(법률 제20328호, 2024.2.20. 공포, 2025.2.21. 시행) 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기준 및 절차 마련 (안 제43조의2 신설)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기준으로 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토록 함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변경 신고, 폐업 또는 휴업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함
- ②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43조의3 신설)
 - 의약품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24시간의 신규교육과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함
 - 교육 내용, 방법 및 교육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③ 의약품 판촉영업자 재위탁 통보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44조제5항)
 - 재위탁한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재위탁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하고, 재위탁이 변경된 때에도 통보하도록 규정함
- ④ 위탁계약서 내용 규정 (안 제44조의2제7항 신설)
 - 위탁 의약품명 및 품목별 수수료율을 포함한 위탁 내용,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위탁 계약서 명시사항을 규정함
- ⑤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 내 데이터 연계 근거 마련 (안 제44조의4제2항 신설)
 - 지출보고서 실태조사·공개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제공받아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⑥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절차 등 마련 (안 제59조의2 신설)
 - 지위 승계 절차 및 지위 승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⑦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명확화 (안 별표2)

-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를 명확히 함
-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제품설명회 식음료 기준을 명확히 함
- 의약품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하는 등의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

⑧ 의약품 판촉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마련 (안 별표3)

- 의약품 판촉영업자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tel:044-202-2493) (전화: 044-202-2493, 팩스: 044-202-3927)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19.
~08.30.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행위제한 등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는 때에 부과하는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중소기업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고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을 전문적·기술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에 그치도록 하는 입법원칙 및 통상적인 입법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위임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기 곤란하고, 고시 등 행정규칙은 대통령령·부령 등과 달리 주무부처 단독으로 개정 가능하므로 국민 권익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제재처분 세부기준을 중소기업부 고시가 아니라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제재처분 세부기준 위임 (안 제22조제4항)
- ② 창업기획자에 대한 제재처분 세부기준 위임 (안 제36조제3항)
- ③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제재처분 세부기준 위임 (안 제49조제3항)
- ④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제재처분 세부기준 위임 (안 제62조제5항)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tel:044-204-7733) (전화: 044-204-7733, 팩스: 044-204-7729)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4.07.18.
~08.27.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
이에 따라, 법 시행(’25.2.14.)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선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시 사전 동의·고지 기간 구체화 (안 제20조의2)
 -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로 전환되기 전 증액의 경우에는 30일, 유료 전환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의 취소 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함
- ② 반복 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최소 기간 구체화 (안 제27조의2)
 -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7일 이상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 간섭에서 제외함
- ③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안 [별표 1], [별표 3])
 -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신설함
- ④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절차 위임 근거 신설 (안 제30조제3항)
 -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의 구체적인 공개 방법, 절차 등을 고시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http://www.kftc.go.kr) (전화: 044-200-4449, 팩스: 044-200-4446)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4.07.18.
~08.27.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

이에 따라, 법 시행(’25.2.14.)을 위해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선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재화 등의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고지 방법 구체화 (안 제11조의4)
 - 재화 등의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와 추가 항목의 가격에 제외되었고, 추가 항목의 가격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고지하도록 함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서류 변경 (안 [별지 제1호·제4호서식])

- 통신판매업 신고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하여 확인하도록 서식을 변경함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전화: 044-200-4449, 팩스: 044-200-4446)

특허청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7.18.
~08.27.

정보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산업이 다양해짐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수하도록 변리사법이 개정되었으나(2016.7.28. 시행),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시 불성실 교육생이 지속 발생함에도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못한 바,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변리사법 시행령」내에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의 비대면 교육('이러닝' 교육), 성취도 평가,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집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률소비자에게 양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 수정 및 구체화 (안 제2조제6항)

- 조문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문장 내 불필요한 표현 삭제 및 수정
- 현행 조문은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부정한 수강행위에 대한 제한이 어려웠으므로, 조문 표현을 수정
- 해당 조문의 입법목적은, 실무수습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아니라 실무수습을 '부실하게 이수'한 경우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조문 내용 수정 및 제한 사항 구체화

② '이러닝' 실시 근거 신설 (안 제2조제7항)

- 집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러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③ 집합교육 '성취도 평가' 실시 근거 신설 (안 제2조제8항)

- 집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간 자체적으로 실시해온 '성취도 평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④ 하위법령 위임 범위 수정 (안 제2조 제9항)

- 동 조 개정에 따른 제7항 및 제8항의 신설로, 하위법령 위임 범위를 '제1항부터 제8항'까지로 수정

※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전화: 042-481-3940, 팩스: 042-472-3421)

특허청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7.18.
~08.27.

정보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산업이 다양해짐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수하도록 변리사법이 개정되었으나(2016.7.28. 시행),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시 불성실 교육생이 지속 발생함에도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못한 바,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변리사법 시행령」내에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의 비대면 교육('이러닝' 교육), 성취도 평가,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집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률소비자에게 양질의 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고자 함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있는 법령의 개선을 추진하면서, 「변리사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내 개인정보 정비를 권고함에 따라, 등록기준지, 성명 한자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변리사 자격증 발급 및 등록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최소화를 통해 처리 정보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로서 '불성실 교육 이수' 명시 (안 제4조제1항제1호)
 - 조문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호가 규정하는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조문 내 '불성실 교육 이수'를 직접 명시
- ②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로서 '성취도 평가' 명시 (안 제4조제1항제2호)
 -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8항을 반영하여, '성취도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실무수습을 불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구체화
- ③ 실무수습 불인정 세부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 위임 근거 마련 (안 제4조제2항)
 - 집합교육의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수습 불인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 ④ 변리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내 과도한 개인정보 삭제 (별지 제1호, 제1호의2, 제4호, 제5호, 제6호, 제13호 서식)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식 내 '등록기준지', '성명 한자' 등 과도한 개인정보 삭제

※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전화: 042-481-3940, 팩스: 042-472-3421)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2024-07-16 발의
---------	----------------------------------	---------------

현행법은 등기부등본상 공시되어 있지 않는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한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사람의 대부분은 공인중개사를 전적으로 의존하여 등기부등본 이외의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는 전세사기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차권의 확인 권한에서 공인중개사는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 또한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4항)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2024-07-17 발의
---------	-------------------------	---------------

현행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제397조의2는 이를 명시하지 않아 사후에 승인받아도 되는지 여부에 관한 법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이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을 이용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397조의2)

정무위원회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2024-07-15 발의
-------	------------------------------	---------------

현행법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

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한 경우,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해당 제조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인 피해자가 결함의 존재,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특히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 사실 입증에 필요한 관련 정보는 제조업자 등 일방에만 편중되어 있고, 일반 소비자가 사실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며, 정보에 대한 해석·적용 또한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 피해자가 소송 수행 시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임

이에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경우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정무위원회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2024-07-16 발의

현행법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 및 해당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된 제조물의 경우, 이에 관한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추정을 위한 사항들을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제조물과 관련된 자료에 접근하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고,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조업자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며, 자료 제출을 통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시정·보완하고 증거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2, 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 및 제9조 신설 등)**

정무위원회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의원 등 12인)

2024-07-17 발의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모두 증명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입증책임 완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와 같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경우 결함 등의 추정 요건조차 피해자가 증명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소비자 피해 구제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며, 제조물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특례를 둬으로써 자동차 급발진 사고 등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3 및 제3조의4 신설)

정무위원회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의원 등 32인)

2024-07-17 발의

현행법은 차량의 급발진 사고 등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부여하면서 피해자가 결함 및 손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입증만으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제조물 특성상 대부분의 증거가 제조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여전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소송 과정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은 상대방 또는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소극적 운용,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문서제출명령보다 강화된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하여, 불이행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고의나 과실로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게 되면 법원이 실기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자료제출을 통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시정·보완하고 증거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손해의 증명 등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훼손하는 등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신청인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의2 신설)
- ② 당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되어야 할 자료를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의3 신설)
- ③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상대방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의4부터 제7조의6까지 신설)

정무위원회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4인)

2024-07-18 발의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 원리에 입각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개정된 것임

그런데 현행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가공된 제조물의 경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현행 규정보다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자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3 신설)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2024-07-15 발의

현행법은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을 제한적으로 설립·운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CVC(벤처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자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외부 출자 한도를 출자금 총액의 40% 이내로 제한하고, CVC의 해외투자는 총 자산의 20% 이내로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투자가 위축되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CVC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CVC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40%에서 50%로, 해외투자 제한의 경우 20%에서 30%로 완화함으로써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제3항제4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

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2024-07-17 발의

현행법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두면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 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당시 대비 3배가량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인상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금 지급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제2항 후단 및 제5항 신설)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2인)**

2024-07-18 발의

현행법은 불법 공매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 공매도로 인한 시장 왜곡 및 투자자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

하고 있음

불법 공매도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조작하는 행위로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며, 주식시장의 가격 체계를 왜곡하는 행위로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주식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벌금을 2배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공매도 근절과 함께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모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443조제3항 신설)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2024-07-18 발의

현행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두산그룹이 두산로보틱스(주)와 두산에너지빌리티(주)간 분할·합병 및 두산밥캣(주)과 두산로보틱스(주)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그룹의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연매출이 10조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두산밥캣이 매출규모가 두산밥캣의 183분의 1에 불과하고 영업손실을 낸 두산로보틱스와 같은 기업가치로 주식을 바꿔야 하는 것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현행법을 최대치까지 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65조의4 등)

정무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2024-07-18 발의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달리하므로, 형사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공요구 행위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사제재를 가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2020헌가5, 2022. 2. 24.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거짓된 서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2024-07-15 발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이며,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기부금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음

최근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기부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그 수습에 재정이 소요되므로 해당 지역에 대한 기부금 모금을 유도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500만원 이하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면서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구간을 신설하고, 전액 공제되는 기부금액 기준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안 제58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7인)

2024-07-17 발의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고향에 대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0만원 이하 기부금액에 대하여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며,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지난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어 오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역소멸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 58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2024-07-17 발의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을, 10만원을 초과하고 5백만원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10만원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그 수습에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있어서 여타 지역과 차등 없는 내용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20만원에 대하여 전액을,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0만원과 초과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안 제58조 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2024-07-18 발의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기업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연구개발 장비라도 그것이 사용되는 장소에 따라 기본공제율을 적용받기도 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로 인정되어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기도 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국가전략 연구개발 장비의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가전략기술의 안정적인 개발과 적용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의 범위 및 공제율, 일몰기한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장비를 취득할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이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안 제10조의3 신설)
- ②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시키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6년 연장함 (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③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4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 (안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2024-07-19 발의

해운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중 해운소득에 대해서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톤세제 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임

톤세제는 90년대 유럽에서 경쟁 해운국과의 대등한 조세환경 조성을 통해 자국상선대 경쟁력 강화와 해외에 등록된 자국 상선대의 자국 내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아시아 최초로 톤세제를 도입함

해운기업은 톤세제를 통해 세액지출 예측이 가능하여 경영전략 및 자금운용 계획 수립이 용이할 뿐 아니라, 톤세제를 통해 절감한 법인세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선박 투자에 활용함

우리나라는 톤세제 도입 이후 국적선대가 3.7배 증가하여 2005년 세계 8위에서 2022년 세계 4위의 해운강국으로 도약하였으며, 그동안 국적선사들은 신조선 발주의 86%를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여 우리나라 조선산업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함

특히 국적선사는 선박 확충을 통해 지난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대란 당시 해외 선사들이 국내 항만 기항을 기피하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 항만에 지속적으로 기항한 것은 물론 추가로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국내 수출입 화주들의 물류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현재에도 홍해 사태로 인한 물류대란 여파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화주들을 위해 추가 선박을 제공하는 등 이바지하고 있음

이처럼 국적선사는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있어 무역업체의 수출경쟁력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국내 조선소 선박 발주를 통한 조선소 일자리 창출과 국내 항만 기항을 통해 항만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전후방 산업이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함

만약 해운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이 축소될 경우 실효세율이 높아질 뿐 아니라 법인세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없어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계획적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또한 덴마크,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 해운선진국의 경우 자국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구적으로 톤세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톤세제 특례 일몰기한을 5년씩 연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사실상 한시적 톤세제가 시행되고 있기에 우리나라 선사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선대 확충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는 톤세제 특례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여 국내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해운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10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2024-07-18 발의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총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6%(2022년 4.66%)으로 OECD 평균 14.9%보다 훨씬 낮으며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최하위 수준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경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09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2024-07-19 발의

현행법은 24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해외 주요국의 경우 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반면 국내 기업은 높은 수준의 법인세로 인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2024-07-18 발의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세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오늘날 지식재산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으며, 특히 시장 규모가 큰 글로벌 시장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해외특허 확보가 필수적임

하지만 해외특허를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제반비용은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중소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참고로 우리나라의 수출 1억불 당 해외출원 건수는 '17년 기준으로 11.7개로 일본(28.5개)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국내출원의 해외출원 연계비율은 대기업의 약 1/10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해외특허에 대한 미흡한 투자는 타국 경쟁기

업의 기술 선점으로 이어지고, 결국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기업이 주요 국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해주어, 중소기업이 해외특허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11조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5인)

2024-07-18 발의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 목표를 수립했음. 이를 위해 미래차 3강전략 수립('22.9월), 미래차 분야 국가전략기술 지정('23.5월), 미래차법 제정('23.12월) 등 미래차 전환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은 전체 차량 대비 2.3% 수준(누적기준, 약 60만대)에 불과하며, '24년 상반기 신차판매 기준으로 8.2%(약 6만7000대)로 본격적인 보급 활성화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임. 더군다나, '24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16.5% 감소, 수소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38.7% 감소를 기록 중임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까지 일몰될 경우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 지연 및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 위축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부정적 영향 끼칠 우려가 매우 큼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 (안 제109조)

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024-07-15 발의

현행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만들어진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해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제한적인 담배의 법적 정의로 인해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시설이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끊임없이 들어서는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함으로써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현행법의 목적도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서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 등’으로 변경하여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조 및 제2조)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2024-07-15 발의

현행「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수도권을 벗어나 이전할 경우 세액 감면 등의 세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 본사의 약 70%와 벤처 기업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법인세 감면 특례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국회에서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 적용 필요성이 논의된 적 있음. 당시 심의 과정에서 차등 법인세율 적용이 기업들로 하여금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헌법 제120조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낙후된 지역의 산업고용 및 소득을 성공적으로 향상시킨 사례가 있음이 검토되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적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차등적 법인세율 적용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도권 지역 과밀화를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55조제1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5인)

2024-07-16 발의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가 아동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아동을 유해·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불링(괴롭힘)에 무방비로 노출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SNS 도 술·담배처럼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등 SNS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미국 플로리다 주는 14세 미만 아동에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공포했고 유타·오하이오 주는 각각 18세·16세 미만 아동이 SNS를 사용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음. 영국 또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SNS 계정 만드는 것을 제한하는 법을 두고 있음. 심지어 프랑스 정부의 용역보고서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SNS 사용 금지를 제안한 바 있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SNS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개한 2022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세에서 13세 아동이 인터넷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2시간 40분에서 2022년 5시간 40분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해매체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사업자에게는 회원가입 신청자가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승낙을 거부함으로써 SNS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함 (안 제44조의11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2024-07-17 발의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호하는 콘텐츠 특성에 근거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지속적인 노출로 SNS 중독, 확증편향 등 청소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지난해 미국 41개 주 정부가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청소년SNS 중독의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진행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의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국내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하루 이용시간이 지난해에 비해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미디어 중독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고리즘 게시물의 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알고리즘 게시물이 아닌 시간순으로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하여 소셜미디어의 중독성과 부작용으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것임 (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42조의4 신설 등)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극히 제한적인 자유표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제1기 자유표시구역은 7개 지역 신청 중 1개(서울 강남 코엑스 일대) 지역만 지정되었고 제2기 자유표시구역은 11개 지역 신청 중 3개 지역(서울 광화문, 명동, 부산 해운대)만 지정됨

중앙부처의 비지속적('16년 공모·선정 / '23년 공모·선정)이고 대도시 중심(서울 3, 부산 1)의 선정은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명소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고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유표시구역 지정은 전국 단위의 공모·선정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의 기회를 축소시켜 지방자치활성화를 저해함

따라서 자유표시구역의 지방 전면이양을 통해 시·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으로 자유표시구역을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정함으로써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장소마케팅으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를 육성하고자 함.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소통을 증대시켜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시·도지사는 시장등의 신청을 받아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을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의4제1항)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4조의4제3항)
- ③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군·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안 제4조의4제4항)
- ④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 (안 제4조의4제5항)
- ⑤ 시·도지사는 시장등의 요청이 있거나 자유표시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의4제7항)
- ⑥ 시·도지사와 시장등은 자유표시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의4제8항)
- ⑦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자유표시구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7조제1항제3호 신설)
- ⑧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 중 제4호의2의 사항을 삭제함 (안 제7조의2제4호의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2인)

2024-07-18 발의

게임·영상·웹툰 등 콘텐츠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각 콘텐츠별 분쟁도 급격히 늘고 있다. 2019년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이 총 6,638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총 17,202건, 2024년에는 총 15,177건이 접수되는 등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콘텐츠 분쟁 조정사건 증가 추세에 따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는 한편 인력을 확충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조, 제29조의2 신설)
- ②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안 제33조제3항, 제33조의2 신설)
- ③ 조정부는 분쟁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 (안 제33조의3 신설)
- ④ 다수의 이용자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3조의4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5인)

2024-07-15 발의

현행법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기술을 식품산업과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푸드테크산업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푸드테크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8호·제9호 및 제12조의3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

2024-07-16 제출

축산물 소비 경향의 변화, 새로운 유통경로의 확산 등 축산물 유통환경 전반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약하고 지원 수단이 부족한 문제가 있는바,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및 축산물의 거래가격 보고·공개 등 다양한 신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는 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축산물의 가격안정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②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의 추진·지원 (안 제8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체계의 효율화 및 전자적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및 전자적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③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칭 변경과 업무 범위 확대 (안 제10조)**

- 종전의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여 축산물 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유통 관련 공공기관으로 업무 범위를 확장함

④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 육성 사업의 추진·지원 (안 제13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축산물 유통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축산물 유통 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⑤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사업의 추진·지원 (안 제14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체계의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 시설에 대한

개수·보수·현대화, 축산물 거래제도의 구축·활성화 및 축산물 유통 구조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⑥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 및 공개 (안 제15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매를 통한 축산물 거래가격이 시장의 상황을 대표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연간 처리하는 물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축산물 거래가격을 보고하도록 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고받은 그 거래가격을 공개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2024-07-16 발의

현행법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적절한 가격 유지를 위한 계약생산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공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시에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 사실상 농가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적절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 ② 농산물의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함 (안 제9조의3 신설)
- ③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 (안 제16조의2 신설)
- ④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가격, 품목 선정 주기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16조의3 신설)
- ⑤ 계약생산 지원과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수현의원 등 26인)

2024-07-17 발의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하도록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의 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 붕괴위험이 과속화되고 있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농업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을 초래하고 가격의 불안정은 농업인의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2022년 기준 곡물자급률이 22.3%에 불과하는 등 식량자급 위기 상황도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임산물의 경우 소관부처가 산림청인 체계상의 한계로 농식품부 소관의 농산물에 비해 가격안정 제도의 수혜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어온 것이 현실임

이에 주요 과일, 채소, 임산물 등을 포함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일정한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산물 과잉생산 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9조제5항 신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함 (안 제16조의2 신설)
- ③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등을 심의·의결하는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함 (안 제16조의3 신설)
- ④ 농산물가격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함 (안 제5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2024-07-18 발의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플라스틱 소재를 비롯해 일회용 소재 등으로 만든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화훼산업과 화훼문화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훼산업 역시 친환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2항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2024-07-15 발의

최근 배달 플랫폼 산업이 발달하면서 내연 이륜자동차로 인한 도심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연 이륜자동차를 전기이륜자동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제외되고 있어, 이와 같은 전기이륜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에 이륜자동차를 명시하여 전기이륜자동차 관련 지원 정책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전기이륜자동차와는 호환이 되지 않으므로 충전구역의 주차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호 및 제11조의2제7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2024-07-15 발의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의무휴업일에는 대형마트 등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영업 역시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임

최근 유통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소매시장 및 소비자 트렌드가 오프라인유통에서 온라인유통으로 급격히 넘어가고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심지어 국경의 제한조차 없는 온라인쇼핑은 이미 보편화된 쇼핑채널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쇼핑 영업까지 제한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한 영업규제가 사실상 중소유통업을 보호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온라인쇼핑 영업을 규제해도 그 반사이익이 중소유통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다른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소매업에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어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온라인쇼핑 규제는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의무휴업일 제한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제1항 단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2024-07-15 발의

대한민국의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에 관한 촉진법을 두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대한민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입지규제가 지적됨. 중앙정부 차원의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로 관련 이격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임. 다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주민 주거권 및 자연보호 측면에서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정립이 중요하다 할 것임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에 대한 법률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복리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 및 촉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안 제27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07-15 제출

중소기업 ombudsman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견 제출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의 점검, 조사 및 보호 조치 등의 업무를 중소기업 ombudsman의 업무로 추가하고,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해당 업무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중소기업 ombudsman의 개선권고를 요청받은 업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 ombudsman은 업무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漏泄)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2024-07-15 발의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온누리상품권의 종류로는 종이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및 충전식 체크카드 등이 있음

그런데 모바일상품권과 충전식 체크카드의 경우 5% 또는 10% 할인상품권이 발행되고 있는 반면, 종이상품권은 5% 할인상품권만 발행되고 있어, 모바일상품권 및 충전식 체크카드의 이용이 어려운 모바일 약자를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또한,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온누리상품권을 할인하여 발행하는 경우 취약계층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할인율을 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에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사업의 형평성을 높이고 가맹점들의 수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6조의7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여기구의원
등 10인)

2024-07-17 발의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임. 우리나라도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총 온실가스배출량의 87%에 달함. 석탄은 국내 전력 생산원의 약 32.5%를 차지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주요 사항으로 반영하였으나, 탈석탄 과정에서 예측되는 지역사회의 피해 대책과 근로자의 실업이나 전직 등에 대한 대책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특정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의 목적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②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안 제3조)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폐지지역 종합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및 제6조)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및 제8조)
- 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특구로 지정하고,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특구발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9조 및 10조)
- ⑥ 폐지지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및 수소산업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대출 상환유예·기한 연장·이자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함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⑦ 폐지지역에 공공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조세·부담금 감면 및 국·공유 재산 대부·사용 등 관련 특례를 규정함 (안 제15조부터 19조까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2024-07-18 발의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금형, 주조, 용접, 열처리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수탁기업은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는 경우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예외적으로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연동을 기피하기 위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하나의 수탁·위탁거래를 단기간 또는 소규모로 나누어 위탁하는 일명 ‘쪼개기 계약’ 등을 제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하여 수탁·위탁거래를 여러 차례 나누어 위탁하거나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완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조 및 제21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안철수의의원 등 15인)

2024-07-18 발의

최근 과학기술이 국가 안보와도 결부되는 시대에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가 계속되면서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법률에서는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통제할 근거가 부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위반행위의 엄중함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아 사회적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음

이에 국가핵심기술의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9조의2 신설)
- ②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9조의3 신설)
- ③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 ④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을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하도록 함 (안 제14조의4 신설)
- ⑤ 침해 신고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검토하고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침해 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제3항 신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 하도록 함 (안 제17조의2 신설)
- ⑦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행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안 제34조제2항 신설)
- ⑧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 (안 제36조제1항)
- ⑨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 (안 제36조제2항)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2024-07-18 발의

현행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주 5일제 근무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선진국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 여가문화의 확산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그에 맞추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1조의2제1항, 제51조의3)

환경노동위원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2024-07-18 발의

서산시 대산임해지역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27년에 약 135.1천m³/일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수원(대청댐, 대호지, 아산호, 해담)의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체수자원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임

한편, 민간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기존의 수원인 해수담수와 비교해볼 때 취수시설 간소화, 전력비 절감 등 사업 경제성에 이점이 있고 탄소배출량을 연간 약 4천톤 저감할 수 있어 친환경적인 대체수자원으로 적합하지만 현행법은 발전소 온배수만을 규정하여 재이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조 등)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균의원
등 20인)

2024-07-16 발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서 차선이탈을 알려주는 장치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 돌진 사고가 잇따르며 차량 급발진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고,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페달 부분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으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43조의3)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2024-07-17 발의

현행법은 지난 2024년 2월 개정에서 급발진 추정 사고 등 각종 자동차사고의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전후의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음 (2025. 2. 14. 시행예정)

그런데 사고기록장치의 경우 운전자의 접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보분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고원인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영상정보가 배제된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사고기록장치만으로는 급발진 여부를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해당 영상정보가 급발진 여부 판별에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및 제29조의3제1항·제2항·제4항 등)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전체회의	7/26(금) 10:00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2차)
정무위	전체회의	7/22(월) 10:00	- 금융위원장 후보자(김병환) 인사청문회
	전체회의	7/24(수) 10:00	- 업무보고(비금융분야)
	전체회의	7/25(목) 10:00	- 업무보고(금융분야)
기재위	전체회의	7/22(월) 10:00	- 업무보고(국세청 등 4개 기관)
과방위	전체회의	7/24(수) 10:00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1차)
	전체회의	7/25(목) 10:00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2차)
행안위	전체회의	7/23(화) 10:00	- 경찰청장 후보자(조지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자료 제출 요구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	7/22(월) 15:00	- 법안 심사
환노위	전체회의	7/22(월) 10:00	- 환경부장관 후보자(김완섭) 인사청문회 - 법안 심사
	전체회의	7/24(수) 10:00	- 환경부장관 후보자(김완섭)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인사청문 특위	전체회의	7/22(월) 10:00	-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전체회의	7/24(수) 10:00	- 대법관(노경필)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전체회의	7/25(목) 10:00	- 대법관(박영재)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전체회의	7/26(금) 09:00	-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청문회 당일에 채택하는 경우 미개최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7/22(월) 07:30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연속 세미나 -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황과 과제	전진숙·이수진 의원실 등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7/22(월) 10:00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개편으로 활력!	이달희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7/22(월) 13:30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토론회	이용우·안호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7/22(월) 14:00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 공시 방향 제안	김성환·강훈식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7/22(월) 14:00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1회차 - 한국민주주의는 불평등을 완화시켜 왔나?	정태호·김주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7/22(월) 15:00	윤석열정부의 공영방송파괴	이훈기·김우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7/23(화) 09:00	국방 무인체계 현재와 미래, 육해공 무인체계 발전 방향 세 미나	유용원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7/23(화) 10:00	제2기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창립 총회 및 세미나 - 가자! 행복국가로!	윤호중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7/23(화) 10:00	주주의 비례적이익과 밸류업 토론회	박상혁·강준현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7/23(화) 10:00	출생기본소득 '절망에서 희망으로' 토론회	강선우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7/23(화) 13:30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할 것인가?	이수진·김주영 등	국회도서관 강당
	7/23(화) 14:00	AI 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	고민정·김문수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7/23(화) 14:00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와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남인순·이수진 의원실 등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7/24(수) 07:30	국회 인공지능(AI) 포럼 초청 특별강연 - 인공지능, 무엇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인선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7/24(수) 10:00	K-스포츠문화포럼 창립세미나 & 건강페스티벌 - 스포츠는 건강한 문화다	임오경 의원실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7/24(수) 10:00	국내 혈액질환 환자의 치료환경 개선방안	이주영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7/24(수) 10:00	전환기의 K플랫폼, 바람직한 입법·정책 방향은?	조승래·이인선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7/24(수) 10:00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안과 방향 모색	이성권·신정훈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7/24(수) 14:00	남해안 관광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 사진 전시회	최형두·권향엽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7/24(수) 14:00	중소·중견기업이 원하는 탄소중립 지원 방안 토론회	박정현·김성환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7/24(수) 14:00	질주를 멈춘 K-콘텐츠 산업 그리고 방송 노동자의 고용불안	이기현·강유정 의원실 등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
	7/24(수) 14:30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모색 정책토론회	위성곤·김한규 의원실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7/25(목) 10:00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바람직한 법관임용자 격 개선방안	김용민·김승원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7/25(목) 10:00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 창립식 및 세미나	이성권·김종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7/25(목) 10:00	내 일(My Job)을 꿈꾸는 북한이탈주민의 진솔한 취업 이 야기	박충권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7/25(목) 14:00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창립 세미나	최보윤·김건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7/25(목) 14:00	동탄2신도시 통학전용 순환버스 도입을 위한 토론회	이준석 의원실	동탄목동 이음터
	7/25(목) 14:00	국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킥오프 회의	송석준·손명수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7/26(금) 14:00	노인빈곤 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	김남희·신장식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7/22(월)	「THE 현안」제20호 발간 - 우리동네 빈집, 누군가의 빈집	국회도서관	
	7/23(화)	「최신외국입법정보」제251호 발간 - 일본의 외국기능인력 확보 입법례		

7/24(수)	「금주의 서평」제687호 발간 - 도서명 : 기꺼이 나의 죽음에 동의합니다 - 저자 : 진 마모레오, 조해나 슈넬러		
7/25(목)	「현안, 외국에선?」제87호 발간 - 덴마크 재생에너지 전환정책 및 성공요인		
7/25(목) 13:30	국회도서관-한국법제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 저출생 대응 글로벌 법제동향과 입법과제		의원회관 1소회의실
7/26(금)	「NABO Focus」제73호 발간 -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관련 주요 쟁점	국회예산정책처	
7/22(월) 16:00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처 부속회의실
7/22(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103호 발간		
7/26(금) 09:30	제22대 국회 개원기념 토론회 개최 - 국회가 주목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	국회미래연구원	의원회관 2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4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7/15(월)	「최근 현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4-5호)」발간	국회사무처	
	7/15(월)	「이달의 입법민원」(2024. 6월호) 발간		
	7/15(월)	「THE 현안」제19호 발간 - 최저임금	국회도서관	
	7/16(화)	「최신외국입법정보」제250호 발간 -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7/17(수)	「Data & Law」2024-7호 발간 - 데이터로 보는 개인정보보호		
	7/17(수)	「금주의 서평」제687호 발간 - 도서명 : 침몰하는 일본은행? - 저자 : 니시노 도모히코		
	7/15(월)	「분석 보고서」 -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7/16(화) 09:30	제22대 국회 개원 기념 재정경제 토론회 개최		의원회관 1소회의실
	7/18(목)	「분석 보고서」 -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 결과 분석		
	7/18(목)	「분석 보고서」 - 202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총괄 분석		
	7/18(목)	「분석 보고서」 - 2023회계연도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7/18(목)	「분석 보고서」 -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7/19(금)	「NABO 재정경제통계 Brief」제4호 발간		
	7/15(월)	「이슈와논점」제2260호 발간 -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7/16(화) 10:00	국내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세미나		조사처 대회의실

	7/18(목)	「NARS 입법정책 제152호 발간 - 감춰진 피해자들 :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 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7/15(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102호 발간 - 청년의 지역 거주의향과 삶의 만족도	국회미래연구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7.15~07.21)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7/16(화)	소송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대법원 최종 승소)
7/18(목)	ESG	2024년 ESG 동향 중간 결산 및 하반기 전망 : 지속가능성 규제와 기업지배구조
7/19(금)	중국	중국 회사법 중 경영진 관련 규정의 개정과 시사점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